

# 근대 독도 포함 해양 관련 역사분야의 성과와 한계

김영수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한국은 1947년 8월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1차 학술조사를 실시했는데 역사학자로 당시 국사관 부관장 신석호(申奭鎬) 등이 참여하였다. 그 후 추가적으로 독도에 관한 다양한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학술 연구는 1965년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 분야의 독도 관련 연구를 편찬한 『독도(獨島)』라는 책에 수록되었다. 그 책의 간행사는 “독도영유권에 관한 몇 편의 글을 모아 전근대적인 망상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로 삼는다”고 기록되었다.<sup>1)</sup> 당시 한국 학계는 일본의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학술적으로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 투고: 2016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16년 8월 16일, 게재 확정: 2016년 8월 19일

1) 元容奭, 1965, 「刊行辭」, 『獨島』, 大韓公論社, 5쪽. 이 논문에서 표기한 죽도(竹島), 송도(松島)는 기본적으로 원 저자가 논문에서 표기한 대로임을 밝힌다. 저자는 예외적으로 일본 학자가 '竹島'라고 표기했을 경우에는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50년대 일본 외무성 관료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가 일본의 한국 침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독도가 근세 초엽 이래 일관되게 일본 영토였다”는 논리로 역사적·지리적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다.<sup>2)</sup>

일본이 독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자 한국 학계는 1978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를 조직했다. 그 결과 1985년 새로운 사료 지평에서 독도 관련 종합적 연구 성과인 『독도연구(獨島研究)』가 발간되었다. 당시 책 발간에 참여한 한국 학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내용으로 “첫째 독도를 어느 나라가 먼저 인지하고 경영했을까? 또 그 경영의 실체는 어떠했을까? 둘째 일본 측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사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셋째 일본의 소위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40호’가 과연 국제법상 유효한 것인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3)</sup>

21세기인 지금 당시의 고민에서 한국은 학술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세 가지의 의문 중 독도에 관한 ‘인식’과 ‘경영’에 관한 한국의 학술적인 성과가 바로 송병기의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이었다.<sup>4)</sup> 송병기는 이미 1978년 결성된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의 일원으로 독도 연구를 시작하여 그 후 30년 이상 독도 연구에 매진하였다. 저자는 『울릉도와 독도』(1999), 『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2005),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2007) 등의 연구서를 출판하면서 독도 관련 저작의 내용을 꾸준히 수정 보완했다. 또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해서 『독도영유권자료선』(2004)이라는 자료집도 출판했다. 저자는 청동기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독도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울릉도에 청동기 사람이 거주했고, 한국

2)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 研究』, 古今書院; 田村清三郎, 1965,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3)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編, 1985, 『獨島研究』, 文光社, 3쪽.

4)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김영수, 2010, 「과거를 현재로 끌어낸 역사자료의 힘」, 『한국근현대사연구』 53, 7쪽.

이 독도를 예전부터 인식했고, 한국이 영유권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과정, 심흥택 보고서의 경위 등을 분석하였다.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국제법상 불법성을 역사적으로 접근한 성과는 바로 신용하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다. 신용하는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1998-201)』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독도 관련 저서를 집필하였다. 신용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면, 일본 정부가 1905년 2월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하면서 새로이 ‘영토편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신용하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제기하였다.<sup>5)</sup>

그럼에도 송병기와 신용하는 근대 시기 독도를 한국과 일본만의 시선으로 파악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근대 시기 독도 관련 열강과 한국의 국제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sup>6)</sup>

필자는 근대 시기 독도를 포함한 해양 관련 역사분야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러시아의 한국 해양탐사,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 울릉도 개척·삼립·어업을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5)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207쪽.

6) 근대사는 아니지만 현대사에서 정병준은 『독도 1947』이라는 저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국제관계를 새롭게 주목하였다(김영수, 2011, 「국제관계가 한반도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 『영토해양연구』 1, 276쪽).

## II. 서양의 독도 발견 및 러시아의 한국 해양탐사

기존 연구는 서구열강 중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독도 발견 과정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서구열강의 독도와 울릉도 관련 내용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최석우는 영국수로지를 분석하여 영국의 독도 발견 내용을 정리했다. 최석우에 따르면 영국 군함 호네트(Hornet)호는 1855년 4월 25일 독도를 발견하고 호네트 암초로 명명하였다. 영국수로지는 1858년 판에서 영국 군함이 발견한 독도를 호네트라고 기록했고, 1861년 판에서 1849년 프랑스 및 1854년 러시아의 독도 발견 사실을 기록하면서 독도를 리양쿠르로 수정하였다.<sup>7)</sup>

이진명은 프랑스의 지도와 자료를 추적하여 프랑스의 독도 발견 내용을 규명하였다. 이진명에 따르면 서양인에게 독도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1849년 1월 27일 프랑스 르 아브르(Le Havre)항에 소재하던 윈슬루(Winslow)회사 소속의 포경선 리양쿠르(Liancourt)호라고 알려졌다. 프랑스 해군성은 리양쿠르호의 로페즈(J. P. Lopes) 선장의 항해 보고서 중 독도 발견 내용을 파악하여 1851년에 발간한 수로지와 해도에 독도를 리양쿠르 바위섬으로 표기하였다.<sup>8)</sup> 서양의 독도 발견을 조명한 최석우와 이진명의 연구는 향후 영국과 프랑스의 한국 해군정책까지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명복은 러시아 해군함대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및 러시아 해군부 수로지 등의 독도 관련 내용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였다. 최명복에 따르면 빨라다(Палада)

7) China Pilot, London 1861, p. 379; 최석우, 1985, 「구미측 문헌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文光社, 350, 353쪽.

8)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45쪽. 이상균은 일본이 19세기 중엽 영국의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기술적 오류를 범하였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17~19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나 고문서를 보면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기록이 일관되게 나타난다(이상균, 2016,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124~125쪽).

лада)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하여 영국에서 구입한 보스톡(Восток)호와 함께 극동으로 항해하였다. 이들은 1851년 극동에 파견된 올리부차(Олибуца)호 및 멘쉬코프 공작(Князь меншков)호와 합류하여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입항했다. 올리부차호는 1854년 4월 2일 대한해협을 지나서 북쪽의 타타르해협으로 항해하던 도중 4월 6일 러시아에서 최초로 독도를 발견했다.<sup>9)</sup>

심헌용은 러시아의 1880년 이후 해양탐사의 배경 및 내용 등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였다. 심헌용에 따르면 러시아의 탐사목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통상교섭을 수립할 목적으로 항해하였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와 수교관계를 맺기 이전에 집중된 활동으로서 동아시아 각국과의 통상교섭 내지 식민지 영토확장이라는 목표에 따라 실시하였다. 둘째 러시아 해군 또는 해군부 수로국은 새로이 획득한 연해주 연안 및 동방 해안 일대의 군사지리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정기 탐사하였다. 러시아는 연해주를 획득하여 동해 북부지역의 제해권을 확보한 이후 자국 해안선과 주변 해역에 대한 탐사활동에 집중하였다.<sup>10)</sup>

최덕규는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 해군부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최덕규에 따르면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까지 추진되었던 러시아 해군부의 마산포 획득정책은 태평양의 해양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한 원대한 계획의 산물이었다. 러시아 해군부는 이 계획을 통해 태평양 연안에서의 부동항을 해군기지로 확보하고 이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함으로써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의 해양강국으로 부상시키고자 하였다.<sup>11)</sup>

박종효는 근현대 시기 1856~1859년 러시아 해군선집과 조선동해안도, 1905년 러일해전도, 1962년과 2001년 소련 해군수로지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9) 최명복, 1999, 「독도와 러시아」, 『해양전략』 102호, 216쪽.

10) 심헌용, 2008,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군사전략과 독도의 위상」, 『국가전략』 14-2, 183쪽.

11) 최덕규, 2008, 『제정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경인문화사, 49쪽. 필자는 동아시아 근대의 기점을 잠정적으로 아편전쟁이 발생한 1840년으로 설정했다.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박종효는 러시아가 1854년 처음 발견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심헌용과 최덕규는 러시아의 해양탐사의 원인 및 러시아 해군부의 정책을 조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1850년대 빨라다호의 한국 해양탐사 이후 러시아 해군부의 한국 해양탐사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이 분야는 러시아 해군부의 문서를 총체적으로 보관하는 러시아 해군 함대문서보관소(РГАВМФ)에 대한 문서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해군함대문서보관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의 한국 정책, 특히 부동항획득정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해군부 정책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III. 1870년대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

19세기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은 17세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정태만은 1690년대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이 메이지 시대까지 지속되어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태만에 따르면 에도 막부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 조선령’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어부의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메이지 정부는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 주관하에 외무성 등 일본 정부의 4개 부처가 참여하여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공식으로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확인하고 공시하였다.<sup>13)</sup>

12) 박종효, 2015, 「한러 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 『군사』 96, 391~392쪽.

13) ‘양코발견설’은 1901년 3월 흑룡회의 기관지 『회보』에서 시작되어 각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지학전문지 『지학잡지』(1901, 5)가 양코발견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그런데 일본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기타자와 마사노부[北澤正誠]가 작성한 『죽도고증(竹島考證)』은 6세기부터 19세기 후반(1881)까지의 죽도(竹島)와 송도(松島)에 관한 기록을 집성하였다.<sup>14)</sup> 『죽도고증』은 일본 외무성의 필요에 따라 1881년 8월에 작성되었다. 그동안 『죽도고증』은 일본 외무성의 외교 사료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주목했다.

강만길은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 도다 다카요시[戶田敬義], 사이토 시치로베[齊藤七郎兵衛] 등의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죽도고증』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강만길에 따르면 아마기함[天城艦]이 현지에 다녀온 후 송도가 일본에서의 울릉도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고, 죽도는 그 별칭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곧 독도가 명치정부 당국에게는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구양근은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瀨協壽人]와 조선인 김인승(金麟昇)의 활동을 추적하였다. 그는 김인승의 친일활동의 과정을 고찰하면서 세와키의 영향력을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양근은 세와키와 김인승의 조선 인식을 추적하면서 인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sup>16)</sup>

송병기도 기타자와[北澤正誠]의 『죽도고증』 출판과정을 살펴보면 아마기함[天城艦]의 현지조사 결과 및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를 주목하였다.<sup>17)</sup> 송병기는 일본 외무성의 ‘일본 판도 밖의 땅’이라는 결론을 송도(울

밝히자, ‘미발견의 섬’이라는 주장만 삭제하고, 다시 흥룡회의 새로운 기관지 『흥룡』(1901. 6)에 이 섬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이는 양코도 무주지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유포시켰음을 의미한다(정태만, 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2~174쪽).

- 14) 北澤正誠, 1881, 『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 II, 523쪽).  
 15) 강만길, 1985, 「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323쪽.  
 16) 具良根, 1997,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協壽人と 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研究』 7, 126~137쪽.  
 17) 송병기, 2005,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93~94쪽.

릉도)뿐만 아니라 랑고도(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18)</sup>

한철호는 『죽도고증』 문서 작성과정에 참여한 일본 외무성 공신국장(公信局長)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외교활동을 살펴보면서 죽도와 송도에 관한 영토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철호에 따르면 다나베는 막부 당국이 오가사와라[小笠原]섬의 일본인을 퇴거시키고 공도정책을 펼쳐 일본 영토를 내버렸다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오가사와라섬에 대한 공도정책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상실할 뻔했던 유사한 사례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 사할린[樺太]의 경계담판을 들고 있었다.<sup>19)</sup>

김호동은 『죽도고증』의 상권을 중심으로 일본의 『고려사』, 『동국여지승람』의 왜곡을 주목하였다. 김호동에 따르면 기타자와는 송도가 원록(元祿) 12년 죽도라고 불렀던 섬으로 옛날부터 일본 영역 밖에 있었던 땅이라며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조선의 수토정책을 공도제(空島制)라 명명하고 빈섬, 버려진 섬임을 『죽도고증』에서 부각하기 위해 한국 사료를 왜곡하였다.<sup>20)</sup> 김호동은 기타자와의 공도제가 1905년 일본의 무주지선점론과 연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호동은 일본 외무성이 죽도를 소속이 모호한 송도란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김호동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송도가 곧 죽도(울릉도)임을 인지하였지만 일도이명설(一島二名說) 등의 논란을 벌이면서 송도란 이름에 집착을 보였다. 죽도(울릉도)를 죽도라 하지 않고, 송도라고 한 것은 울릉도쟁계로 인해 죽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었다.<sup>21)</sup>

정영미는 『죽도고증』의 전체적인 개략을 살펴본 다음 죽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정영미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울릉도 부속섬인 죽도(덧섬)

18) 송병기, 2010, 앞의 책, 158쪽.

19) 한철호, 2008,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 226쪽.

20) 김호동, 2009, 「竹島考證의 사료 왜곡」, 『일본문화학보』 40, 346쪽.

21) 김호동, 2010, 「메이지시대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 『일본문화학보』 46, 86쪽.

다. 와타나베의 이도이명은 부정되고 다나베의 일도이명(一島二名)이 재확인된 것이다. 정영미는 메이지 시대 정부 차원의 옛날의 마쓰시마=독도 인식이 ‘마쓰시마 개척 논란’을 경과하면서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22)</sup>

김수희에 따르면 세와키는 1875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송도개척론’을 구상하였고, 자신이 고용한 무토 헤이카쿠(武藤平學)를 이용해 외무성에 ‘송도개척원’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세와키는 서양지도에 그려진 송도라는 명칭을 차용해 ‘일본 땅’ 송도라는 이름으로 1도 2명의 불명확한 이름을 붙여 울릉도 선점을 도모하였다.<sup>23)</sup>

그럼에도 세와키, 무토, 기타자와 등의 인물이 『죽도고증』의 주요한 보고자와 청원자와 작성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는 일본 외무성의 죽도와 송도 명칭 확인과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더구나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죽도고증』이라는 보고서에 ‘송도개척’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향후 무역사무관(貿易事務官) 세와키의 죽도와 송도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죽도고증』에 나타난 다양한 논의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870년대 일본의 송도 개척 요구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sup>24)</sup>

22) 정영미, 2012, 「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 『한일관계사연구』 43, 504쪽.

23) 김수희, 2015,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 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 『독도연구』 19, 75쪽.

24) 이케우치는 1877년 태정관 관련 문서를 분석한 다음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메이지 10년의 일본정부 중앙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일본의 판도외라고 공식 문서로 표명하고 있다. 이 사실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池內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149쪽)

## IV. 울릉도 개척·삼림·어업을 둘러싼 조선, 일본, 러시아의 활동

기존 연구는 1882년 4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사 활동 전후 일본의 울릉도 불법 벌목과 조선의 울릉도 개척이라는 부분을 주목했다. 또한 조선 정부가 울릉도 정책을 수토에서 개척으로 전환된 이유를 추적하였다. 더 나아가 울릉도 주변 섬에 대한 위치,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임명 배경, 울릉도 개척 이후 상황, 조일 어업협정 체결과 울릉도의 관계, 울릉도 불법 벌목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러시아와 일본의 울릉도 삼림권을 둘러싼 대립 등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1960년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가 일찍이 소개됐지만 다양한 자료에 기초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이었다. 그 이유는 이규원의 「계초본(啓草本)」, 「유사(遺事)」, 「비문(碑文)」 등의 다양한 자료가 2000년대 정리되었기 때문이었다.<sup>25)</sup>

김호동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의 정책과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호동에 따르면 고종과 이규원이 송죽도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은 울릉도를 일본이 죽도로 호칭하고 우산도, 즉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한데서 나온 혼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기존 연구는 죽도가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竹嶼)이고 도항(島項)이 관음도라고 주장하였다.<sup>27)</sup>

송병기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전후 조선 정부의 울릉도 정책변화와 개척

25) 이선근, 1965, 「울릉도 및 독도 탐험 소고」, 『독도』, 대한공론사; 신용하 편저, 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이혜은, 2006, 『만은(晩隱)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 김호동, 2003,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활동의 허와 실」, 『대구사학』 71, 7쪽.

27)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250~251쪽; 신용하, 2005, 「韓國의 獨島領有權에 대한 日本 古文獻의 證明」,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침탈』, 경인문화사, 287~292쪽; 김호동, 2007,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170쪽.

과정,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관계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송병기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을 조선의 울릉도 개척의 결정과 이민의 시작이라고 평가하였다. 송병기는 개척 이후 울릉도 지방제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1884년 3월 울릉도첨사(僉使)를 설치하여 삼척영장이 겸직하였고, 1884년 6월 울릉도첨사를 평해군수가 겸직하였고, 첨사제는 다시 도장(島長)제로 바뀌어 삼척포진관 월송포수군만호가 도장을 겸직하였고, 1895년 2월 울릉도 전임도장을 두었고, 1895년 8월 울릉도감으로 호칭을 바꾸었다.<sup>28)</sup>

신용하는 이규원 검찰사 파견 이후 조선 정부의 울릉도와 독도의 재개척을 주목하면서 동남제도개척사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신용하는 조선이 1882년 4월 이규원의 검찰사 파견으로 울릉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신용하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1882년 6월 일본 외무성에 대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침입과 삼립벌채의 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1883년 3월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에 임명하였고, 쇄환공도정책을 폐기하여 울릉도·독도 재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sup>29)</sup>

2010년대의 연구는 조선의 영토와 해양 인식, 김옥균 관련 인물 연구, 1880년대 울릉도 벌목과 어업 연구로 발전하였다.

박은숙은 1882년 조선의 울릉도 개척과정 및 동남제도 개척사 김옥균의 활동을 상세히 추적하였다. 박은숙은 고종과 박영효 등이 울릉도 개척을 포함한 조선의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숙은 1882년 9월 김옥균과 함께 갔던 수신사 박영효가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울릉도 관련 대화를 주목하였다. 박은숙은 박영효와 김옥균 등 개화파가 동남제도개척사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국경문제와 울릉도 개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28) 송병기, 2005, 앞의 책, 87, 122~123쪽.

29) 신용하, 2006, 앞의 책, 30쪽.

30) 박은숙, 2012, 「동남제도 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영해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6, 112~113쪽.

박성준은 1880년대 울릉도 벌목사업 체결을 통해서 조선의 해양정책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박성준은 1880년 조선의 이전과 대조적인 울릉도 정책의 추진을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파악하였다.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1880년대 조선의 영토정책에 영향을 미쳤다.<sup>31)</sup> 조선과 일본은 1880년대 울릉도 개척과 삼림채벌뿐만 아니라 울릉도 어업과 관련하여 대립하였다.<sup>32)</sup>

최근 연구는 울릉도 관련 어업과 벌목을 둘러싼 조일관계에서 러일관계까지 확장하였다. 이규태는 1881년부터 1903년까지 울릉도에서 일본의 불법 벌목과 어업,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를 정리하였다. 이규태는 러시아와 일본이 해상 전략적인 측면에서 울릉도를 설정했다고 판단하였다. 이규태는 한국과 일본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원산-부산-마산으로 이어지는 동해 항로를 방어하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중간거점으로 울릉도를 상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기존 연구는 대체로 조선의 울릉도 정책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울릉도 불법 벌목과 어채 연구가 일본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박병섭은 1878년부터 1883년까지 울릉도에서 일본 해군과 일본인 등의 불법 벌목과 어업을 추적하였다. 박병섭은 1884년 야마구치현(山口県) 관리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문서를 발굴하여 일본의 울릉도 불법 벌목을 기록하였다.<sup>34)</sup>

기존 연구는 울릉도 검찰사 활동 전후 일본의 울릉도 불법 벌목, 조선의 울릉도 개척 이유, 울릉도 불법 벌목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등을 주목하였다.

하지만 정작 울릉도 조사 전후 이규원의 행적,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활동

31) 박성준, 2014,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벌목 계약 체결과 벌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동북아역사논총』 43, 125쪽.

32) 김수희, 2010a,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19쪽; 이영학, 1995,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8.

33) 이규태, 2013,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둘러싼 러일의 정책」, 『사총』 79, 203쪽.

34) 박병섭, 2010,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3쪽.

등을 꼼꼼하게 고찰하지 못했다. 또한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철저한 사료에 기초하여 판단하지 못했다. 더구나 러시아와 일본의 울릉도 삼림권을 둘러싼 대립에 대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사료에 기초한 연구도 진척하지 못했다. 이 분야는 향후 이규원과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한 사료 발굴을 진행하면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을 주목해야 한다.

## V.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현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보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즉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石島)가 독다”라는 부분이다. 1900년 10월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는데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를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했다. 이것을 통해 독도가 울도의 관할권에 들어갔는가, 칙령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sup>35)</sup>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속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를 뜻한다는 사실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up>36)</sup> 왜냐하면 칙령 제41호 석도 명칭은 한국의 고유 영토론을 강화하는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37)</sup>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4년 일본 군함 니

35) 허영란, 2004,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31쪽.

36)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19쪽.

37) 허영란, 2008, 「독도 영유권 문제의 주요 논점과 ‘고유영토론’의 딜레마」, 『이화사학』 36, 122쪽,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석도와 독도라는 근대적 명칭은 근대 민족국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칭의 유래, 출현의 조건 등이 해명되어야 한다(배성준, 2002,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52쪽).

이타카호[新高號]가 작성한 일지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조선인들이 리안쿠르라는 바위섬을 독도로 표기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다. 현재까지 한국 문헌 중에는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본군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는 구절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독도의 명칭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고문헌에서 등장하는 우산도(于山島)나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등의 명칭, 일본 고문헌의 송도나 죽도가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sup>38)</sup> 또한 독도가 울릉도인들의 인식과 중앙의 인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울릉도인의 생활반경 속에 독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들어가는가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sup>39)</sup>

한국과 일본의 석도 논쟁 과정 중 두 가지가 주목된다. 그것은 일본이 독도에 관한 한국의 인식 시기를 자국보다 늦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근대 석도를 둘러싼 논쟁 과정 중 명칭규정에서 인식차원과 행정관할의 문제로 논쟁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 분야는 향후 1900년 울릉도에 관한 우용정(禹用鼎), 라포르테(E. Laporte), 아카쓰카[赤塚正輔] 현지보고서를 교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복원해야 한다.<sup>40)</sup>

38) 허영란, 2004, 앞의 글, 28쪽.

39) 이병도, 1976, 「우산 죽도의 명칭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김정숙, 2005, 「독도에 대한 역사 지리적 인식」, 『독도연구』 1, 3쪽. 명칭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논문은 다음과 같다. 方鍾鉉, 1947, 「獨島의 하루」, 『경성대학예과신문』 13; 申奭鎬, 1948, 「獨島 所屬에 대하여」, 『史海』 1; 申奭鎬, 1960, 「獨島의 來歷」, 『思想界』 8; 이병도, 1965,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고찰」,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이병도, 1965,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고찰」, 『獨島』, 大韓公論社; 申奭鎬, 1965, 「獨島의 來歷」, 『獨島』, 大韓公論社;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배성준, 2002, 앞의 글; 서중학, 2008, 「독도 석도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3; 유미림, 2008, 「일본의 석도=독도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23-1; 오상학, 2009,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독도연구』 6.

40) 최근 1899년 라포르테 관련 울릉도 조사 보고서가 발굴되었다(홍성근, 2013, 「라포르테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토해양연구』 6).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울릉도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이유와 의도를 살펴보고,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에 대한 인식 과정도 추적해야 한다.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둘러싼 연구는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과 어업활동과 맞물려 연구가 진행되었다.

허영란은 나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독도 어업의 전개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 허영란은 나카이의 대하원(貸下願)을 일본의 영토 편입의 과정으로 파악했다. 허영란에 따르면 일본은 제국주의적 팽창과정에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시켜 영유의 대상으로 관념화시킨 다음 그 역사적 근거를 억지로 만들었다. 다시 그것을 근거로 영유권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었다. 관념화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제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였다.<sup>41)</sup>

김수희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 설립 전후의 연구를 시마네현 어업사료에 기초하였다. 김수희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활동과 강치 포획 내용에 중심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수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나카이를 사장으로 한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어업권을 소유한 사장이 되었고, 공동어업을 약속한 어민들은 회사 사원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나카이는 권력을 배경으로 어업권을 소유하였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선두에 서서 국가정책을 이용하는 제국주의자였다.<sup>42)</sup>

유미림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나카이의 강치어업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유미림은 일본인이 독도 강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미림은 일본 자료에 근거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변화를 주목했다. 유미림에 따르면 지리지에서 독도 호칭은 1890년대 초까지도 송도(松島) 즉 ‘마쓰시마’로 호칭된 경우가 많았고, ‘양코도’ 호칭은 수로지보다 훨씬 늦은 1903년에 등장한다. 민간에서는 여

41) 허영란,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253~254쪽.

42) 김수희, 2010b, 「나카이 요자부르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 152쪽.

전히 ‘양코도’ 호칭이 잔존해 있었다.<sup>43)</sup>

그런데 러일전쟁 중 일본은 1905년 무주지가 아님을 알고서도 독도를 불법 비밀 편입하였다. 그렇다면 주목할 점은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 패전했기 때문에 독도 불법 편입 시점을 소급하여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이다.<sup>44)</sup>

이 분야는 향후 일본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의 연관성을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편입의 도와 이유가 고찰되어야 한다.

## VI. 맺음말

일본은 그동안 독도에 관한 자기부정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일본에 따르면 1905년 1월 28일의 각의 결정에서 “이 무인도(독도)는 다른 나라가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의

43)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64쪽. 유미림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잡은 해산물에 대하여 울도 군수가 수출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당시 울도 군수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김병렬, 2015, 서평: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영토해양연구』 10호, 218쪽).

44) 박현진, 2013,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 학회논총』, 58-3, 162쪽. 박현진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인접성과 통일성에 따른 독도주권과 부속도서론, 17세기 울릉도쟁계 관련 교환공문의 증명력, 독도 관련 지도와 해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을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수용하여 분석하였다(박현진, 2016, 『독도 영토주권 연구』, 경인문화사, 10~11쪽). 유하영은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점조약에 의한 대한제국의 소멸 여부와 일본 제국헌법의 한국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들이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청산 현안문제와 더불어 미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유하영, 2009, 「근대 한국법체제에서의 영토」, 『독도와 한일관계』, 88쪽).

영토 편입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독도는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terra nullius)로서, 1905년 소위 '시마네현 고시 40호' 등을 통해 비로소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877년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 지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조선)의 독도 영유권은 일본 정부(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사실이다. 특히 '시마네현 고시 40호' 5년 전인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수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덧섬) 그리고 석도(독도)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적어도 1905년 1월까지, 내각결정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무주지 선점론', 즉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을 근거로 독도 영토편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1905년 조치는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1905년 이루어진 불법적인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시 말을 바꾸어 고대로부터 자국의 고유영토였다고 모순된 논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주인 없는 땅(무주지)이어서 편입했다. 또 하나는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다. 일본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주장을 억지로 결합시켜놓고도 아직까지 타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침탈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통해서 자기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역사적·법률적 사실에 대한 부정이다.

기존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1905년 전후 일본 주도의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이 어떻게 독도를 둘러싼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900년 전후 타타르(Татарский)해협부터 대한해협까지의 일본과 러시아 해양정책과 독도·울릉도에 관한 상호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1900년 전후 러시아의 한반도 해양정책 중 독도·울릉도·동해의 의미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00년 전후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기록을 발굴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근대 한국·일본·러시아의 영토·해양정책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략 30년 간격으로 1947년과 1978년 울릉도와 독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 후 30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연과 연구 환경 등이 변화하였다. 향후 울릉도와 독도의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 국제, 지리 등의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 관련 일본, 미국과 유럽, 러시아, 한문 등의 새로운 사료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료 발굴에 기초하여 향후 독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강화 및 국제법과 역사학을 결합시키는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 일본 외무성의 죽도와 송도 명칭 확인과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 일본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의 연관성 등의 새로운 사료발굴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수희, 2010,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 김호동, 2007,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 박현진, 2016, 『독도 영토주권 연구』, 경인문화사.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이혜은, 2006, 『만은(晩隱)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영수, 2010, 「서평: 과거를 현재로 끌어낸 역사자료의 힘」, 『한국근현대사연구』 53.
- 박병섭, 2010,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 박성준, 2014,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별목 계약 체결과 별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동북아역사논총』 43.
- 박은숙, 2012, 「동남제도 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영해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6.
- 서중학, 2008, 「독도 석도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3.
- 오상학, 2009,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독도연구』 6.
- 이규태, 2013,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둘러싼 러일의 정책」, 『사총』 79.
- 이영학, 1995,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8.
- 정영미, 2012, 「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 『한일관계사연구』 43.
- 정태만, 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철호, 2008,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
- 허영란, 2008, 「독도 영유권 문제의 주요 논점과 ‘고유영토론’의 딜레마」, 『이화사학』 36.

- 田村清三郎, 1965,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 研究』, 古今書院.
-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編, 1985, 『獨島研究』, 文光社.
- 具良根, 1997,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瀬脇壽人과 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 研究』 7.

## [국문초록]

## 근대 독도 포함 해양 관련 역사분야의 성과와 한계

김영수

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침탈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통해서 자기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역사적·법률적 사실에 대한 부정이다.

기존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1905년 전후 일본 주도의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이 어떻게 독도를 둘러싼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900년 전후 타타르(Татарский)해협부터 대한해협까지의 일본과 러시아 해양정책과 독도·울릉도에 관한 상호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00년 전후 러시아의 한반도 해양정책 중 독도·울릉도·동해의 의미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00년 전후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기록을 발굴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근대 한국·일본·러시아의 영토·해양정책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략 30년 간격으로 1947년과 1978년 울릉도와 독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 후 30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연과 연구 환경 등이 변화하였다. 향후 울릉도와 독도의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 국제, 지리 등의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 관련 일본, 미국과 유럽, 러시아, 한문 등의 새로운 사료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료 발굴에 기초하여 향후 독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강화 및 국제법과 역사학을 결합시키는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 일본 외무성의 죽도와 송도 명칭 확인과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 일본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의 연관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주제어

독도, 울릉도, 리앙쿠르, '다케시마', 석도

**[ABSTRACT]**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Research in Modern  
Maritime History Including Dokdo

Kim Youngsoo

Dokdo had been referred to as Usando and Gajido. But in 1882, when the neighboring island of Ulleungdo was first settled, residents began to call the island Dokseom. *Dok* means *dol*, or stone, in the local dialect, and the settlers of Ulleungdo, who saw the island as comprised of stones, referred to it as *dokseom*, that is, as a stone island. Later, when the Korean word *seom*, meaning “island,” was converted to a Chinese character, the island received the name Dokdo.

The French named the island the Liancourt Rocks after the French whaling ship *Liancourt* charted the island in 1849; the English referred to the island as the Hornet Rocks. The Russians called the island Menalai and Olivutsa Rocks. Japanese people first referred to Ulleungdo as Takeshima and to Dokdo as Matsushima. But in 1905,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ed the island as Japanese territory, it began to call Dokdo as Takeshima.

On October 27, 1900, Joseon issued Imperial Ordinance No. 41, thereby changing the name of Ulleungdo to Uldo and changing the role of its administrator to that of a county magistrate. As a result, the island became the twenty-seventh county in Gangwon Province. Under the Ordinance, the county office was established in Taehadong and the new county magistrate of Uldo held authority over the entire

island as well as over both Jukdo (Daetseom) and Seokdo (Dokdo).

Keyword

Dokdo, Ulleungdo, Liancourt Rocks, Takeshima, Seokdo